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5. 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2월 21일
- 나. 제출자 : 신흥식 의원 외 4인
- 다. 회부일자 : 2013년 2월 22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 4.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경제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

나.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영등포구 관내 음주침정지역을 지정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홍보를 할 수 있음.

(안 제4조)

-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홍보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홍보매체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회사의 후원을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7조)
- 구청장은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
- 영등포구민은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음.(안 제9조)
- 구청장은 매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본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소란과 무질서 등 각종 사건사고와 증가하는 사회적 손실 및 정신·신체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절주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청정지역 지정, 절주실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학교 정화구역, 「주력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관내 버스·택시 정류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된 장소의 입구에 설치하도록 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는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어 관리되도록 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 영등포구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한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제도활동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에 관내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 구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대하여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하거나 청소년 관련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후원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홍보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음주문화에 노출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부터 제10조까지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이나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절주 등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소란과 무질서 등 각종 사건사고와 증가하는 사회적 손실 및 정신·신체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가지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0년 기준 20조 990억원으로 추산되며, 특히 2006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청소년 음주의 장·단기적 폐해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2조 511억원으로 GDP의 1.42% 수준에 이르는 등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정책 마련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 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홍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
----------	-----

발의년월일 : 2013년 2월 일

발 의 자 : 신홍식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영등포구 관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홍보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홍보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홍보매체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회사의 후원을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구청장은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영등포구민은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구청장은 매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학교보건법」 제5조

○ 「주택법」

○ 「도로교통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기 시행중)

다. 합 의 : 보건지원과

라. 자치법규안 :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관내 버스·택시정류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

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반영)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